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83호 2012. 4. 2.(월)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31호(지적기준점 성과고시) 1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32호(도로명주소 고시) 3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33호(도로명주소 고시) 5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260호(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7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263호(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2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272호(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16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276호(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8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278호(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8

회 람							
--------	--	--	--	--	--	--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2 - 3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기준점의 번호	세계측지계좌표		중부좌표		가리좌표		비고
	X	Y	X	Y	X	Y	
70					-1589.38	-18544.25	신설
73					-1631.49	-18648.48	재설치
74					-1664.99	-18709.91	신설
75					-1695.19	-18766.97	재설치
76					-1740.55	-1885049	신설
202					-1518.67	-18551.09	재설치
203					-1463.92	-18560.27	재설치
204					-1406.55	-18571.15	재설치
205					-1620.86	-18858.80	재설치
206					-1596.56	-18814.37	재설치
207					-1645.79	-18792.71	재설치
208					-1608.05	-18714.14	재설치
209					-1583.36	-18674.28	재설치
210					-1535.38	-18700.98	재설치
211					-1500.34	-18643.09	재설치
212					-1477.26	-18594.93	재설치
213					-1563.24	-18752.79	재설치
214					-1429.41	-18620.81	재설치
215					-1386.40	-18645.27	재설치
216					-1333.25	-18673.20	재설치
244					-1669.81	-18834.79	재설치
245					-1715.85	-18804.99	신설
252					-1569.63	-18642.02	재설치
253					-1542.62	-18602.75	재설치
300			434538.48	172340.35			재설치
369			434377.93	170369.77			재설치
379			434726.73	170927.65			재설치
480			434380.55	170548.95			신설

기준점의 번호	세계측지계좌표		중부좌표		가리좌표		비고
	X	Y	X	Y	X	Y	
483			434296.11	170611.75			재설치
537			433924.64	170837.18			재설치
538			433944.75	170874.00			재설치
539			433985.17	170905.94			재설치
553			434533.90	171410.15			재설치
554			434563.71	171379.43			재설치
678			434630.48	172219.76			재설치
679			434685.92	172149.09			재설치
681			434749.75	172068.00			신설
744			434832.67	172138.91			신설
944			435999.35	171415.24			재설치
945			436000.36	171374.94			신설
946			436004.15	171342.69			재설치
947			435933.31	171325.54			재설치
1040			435030.65	171309.56			재설치
1041			435082.08	171342.43			재설치
1042			435138.15	171285.81			재설치
1066			434992.67	171157.96			재설치
1188			434425.87	170904.45			재설치
1191			434593.55	170777.24			재설치
1195			434567.68	171041.93			재설치
2276			434816.58	170970.39			재설치
2277			434778.99	170938.59			재설치
기준점의 명칭			지적도근점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중부좌표, 가리좌표				
토지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및 동춘동				
설치일			2012.3.2				
표지의 재질			철재				
측량성과 보관장소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4. 02.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암대로 82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04. 0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698, 698-3, 698-4, 699, 700, 700-1, 700-2, 700-3, 700-4, 700-5, 701, 702, 703, 704, 705, 706, 706-1, 706- 2, 706-3, 707, 708, 877, 878, 914-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암대로 823	미부여	2009-06-30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에서 도로명 부 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4. 02.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7번길 17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 ~ 79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04. 0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 동 508-5, 508-6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7번 길 17	신축	2009-07-09	비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370m지점 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65-2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78번 길 28-9	신축	2009-07-09	비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780m지점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64-5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78번 길 28-10	신축	2009-07-09	비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780m지점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 - 26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3. 28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규정에 따른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하고 센터의 위탁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 의거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 토록하며
- 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하는 내용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근거 법 명시
-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 노인일자리에 대한 지속적 실체적 활동 범위 규정
- 민간위탁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 의거

적격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토록하여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선정이 이루어 지도록 함.

-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참조: 일자리창출과, 전화 749-8481, FAX 749-8459)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함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보급 및 알선, 교육·훈련 등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적격 심사를 통해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 한다.

③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망 구축
5.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6. 기타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의 수행

제5조(조직 등) ① 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과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타 조직 및 직원의 자격 기준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

4.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은 원상 복구하여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 후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변동되는 사항은 「노인복지법」 등 기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2-26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위원회 기능 관련 개선 내용의 반영을 위해 조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확대
 - 취업확인(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 확인 및 승인)
 - 업무취급 승인 (업무취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업무에 필요하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취급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4. 17(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810-7057, FAX 810-706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개 정(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 2. (생략) 3. <u>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u> 4. (생략)	제3조(기능)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u> 4. (현행과 같음)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열람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810-746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리오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4. 2.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공공지
 - 명 칭 : 연수 복합상업판매시설 전면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설치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5,175.8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대표이사 승만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12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2. 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	성명	비고
1	동춘동	926-1	잡	5,119.4	4,814.12	인천 광역시				
2	동춘동	926-3	잡	46.80	46.80	인천 교통공사				
3	동춘동	926-14	대	314.90	314.90	(주)하나 다울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지상권 설정	인천 광역시	·목적 : 도시철도소유
계				5,481.10	5,175.82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2010. 7. 1 시행)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2011. 7. 1 시행)에 근거하여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가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감사절차, 감사방법 등 세부적인 실시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감사의 근거 법규 및 용어정리(안 제1조, 안 제2조)
- 상위법령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및 기준, 감사방법, 절차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일상감사의 결과 및 효과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 감사결과의 기록·관리 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2년 4월 23일까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032-810-7058, FAX 032-810-7069,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건의, 개선사항등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써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집행부서”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그 소속부서를 말한다.
 - 가. 구 본청
 - 나. 구 의회사무기구
 - 다. 구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

제3조(대상업무 및 범위) ①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범위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별표와 같다.
② 계약심사를 거친 업무라는 사유로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제4조(감사방법) ① 감사방법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한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관은 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자체감사기구에 전문 기술 인력이 없는 분야에 대하여는 대상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일상감사 검토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일상감사로 의뢰된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가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중점 사항)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사업주체의 적정성
4.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5.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6.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7.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9. 그 밖에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의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시)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결과)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날(제6조제3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의견에 대하여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제3항에 따른 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등)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일상감사의 효과 등)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써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제11조(사후관리) 감사관은 일상감사의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 표]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

구 분	대 상 업 무 및 기 준	비 고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 총액기준 3억원 이상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국·시비 보조사업은 제외)													
계약 업무	○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기타계약 (표1)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공사</th><th rowspan="2">용역</th><th rowspan="2">물품 제조구매</th></tr><tr><th>종합</th><th>기타</th></tr><tr><td>추정금액(이상)</td><td>3억원</td><td>2억원</td><td>7천만원</td><td>2천만원</td></tr></table>	구분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종합	기타	추정금액(이상)	3억원	2억원	7천만원	2천만원	
	구분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종합	기타											
추정금액(이상)	3억원	2억원	7천만원	2천만원										
	○ 표1 기준 대상사업 중 설계변경 등으로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이상 증액된 계약 ○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계약 - 단,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이하의 추정금액을 이유로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경우는 제외													
예산관리	○ 예산의 이용·전용에 관한 사항(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재해복구사업비 제외)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 출연하는 지원금 결정에 관한사항(1억원 이상) ○ 금고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업무	○ 20명 이상 공무 국외 여행을 주관하는 사항 ○ 공무원 참여 등 50명 이상의 워크숍, 연찬회, 세미나 등 행사에 관한 사항 ○ 기타 부서(기관)장과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일 상 감 사 요 청 서(제6조제2항관련)

업무(사업)명				
추진근거 (관련법령)				
업무(사업)개요				
일상감사를 받고자 하는 사항				
첨 부 서 류				
업무담당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연 락 처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일 일 일

부서(기관)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일 상 감 사 의 견 서(제8조제1항관련)

관리번호		접수일	
소관부서		처리일	
업무(사업)명			
업무(사업)개요			
감사의견 (조치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실시한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 감사관 (인)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제8조제2항관련)

관리번호			의견서회시일		
업무(사업)명					
감사의견 (조치요구내용)					
조치한 내용					
미조치사유 (관련법규)					
업무담당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연 락 처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일상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서(기관)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제9조제1항관련)

관리번호		소관부서		의견서접수일	
사업(업무)명					
사업(업무) 개요					
감사의견서 요약					
재검토 사유					
관련자료 등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일상감사 재검토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부서(기관)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일상감사 처리대장(제11조관련)

관리 번호	접수일	처리일	소관부서	업 무 명	감 사 결 과		재검토				조치결과		비고
					통보일	감사의견	접수일	사유	처리결과		접수일	조치내용	
									통보일	검토결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개정이유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주민참여예산제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은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지 않고 법령에 근거가 없어 신원조회를 할 수 없어 삭제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주민참여예산제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라는 규정 삭제(안 제4조제3항제1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4. 1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기획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810-7807, FAX 810-706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개 정(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행정 분과위원회 :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과(단, 문화체육과는 제외한다), 의회사무과
2. 주민생활지원 분과위원회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보건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② (생략) ③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2. ~ 3. (생략) ④ (생략)	제4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삭제> 2.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 11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u>기획행정 분과위원회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과, 의회사무과</u> 2. <u>주민생활지원 분과위원회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보건소</u>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 11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u>기획행정 분과위원회 :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과(단, 문화체육과는 제외한다), 의회사무과</u> 2. <u>주민생활지원 분과위원회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보건소</u>